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에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8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의5(종전의 제11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 실제 부양여부”를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한다.

제11조의6(종전의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5)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5) 제4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3 (생 략)</u> <u>제11조의4(확인조사) ① 국가보훈</u> 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 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 육지원 수급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u> <u>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u> <u>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u> <u>· 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u> 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 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u>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u> <u>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u>의3을 준용한다.</u> <u>제11조의4 (현행 제11조의3과 같</u> <u>음)</u> <u>제11조의5(확인조사) ① -----</u> ----- ----- ----- ----- ----- ----- ----- ----- ----- <u>-- 가구원의 소득 · 재산-----</u> ----- ----- ----- ----- -----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1조의3제2항 각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

----- 가구원

1. -----
----- 가구원-----

2.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 4. (생략)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 ----- ----- --. 1. ----- ----- <u>가구원</u>-----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가구원</u>-----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